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 <개정 2026. 10. 26.>

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0일

신청인 (운영주체)	신청단위 [] 지자체, [] 법인, [] 단체	
	사업장명칭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성명	참여 농가 수
	주소 (전화번호)	
	(지방자치단체 주관인 경우) 지방자치단체명: 담당부서: 담당 / 직위: 성명: 전화번호:	

	변경 전	변경 후
변경 내용 (※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)		

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내용의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제출서류	1.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서 사본 2.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, 검토	→	변경 사실 확인	→	변경 여부 판정	→	변경확인 통보
신고인		농림축산식품부		농림축산식품부		농림축산식품부		농림축산식품부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